

자. 가족돌봄휴직

[붙임] 질병, 육아, 가족돌봄 휴·복직 처리 지침 참조

차. 동반휴직

1) 근거: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10호

2) 휴직사유

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(유학휴직)에 해당하게 된 경우

3) 휴직의 요건

가) 휴직 대상: 남·여 교육공무원

나) 휴직인정의 범위

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·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

4) 휴직기간 및 횟수

가) 법정 휴직기간: 3년 이내(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하며 연장기간 중 횟수 제한 없음)로 하되,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, 해외유학·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

‘3년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’의 의미: 동반휴직을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, 그 후 연장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 이내 가능

나) 휴직의 신청,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

법정 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,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장함

5) 휴직신청서류

가) 휴직신청서: 소속, 직, 성명, 휴직사유, 휴직기간 등을 명시

나) 휴직사유 입증서류

(1)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

(2)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
(3)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·입학허가서 등

(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확인)

(4)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(본인 및 배우자, 출국 후 제출) 등

6) 복직절차

가)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(복직원 제출)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